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rogram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 여러분의 기술은 안전합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은 13.1억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기업의 미래인 핵심기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운영기관	✏ 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 부담비용
 대구·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787)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전문가 상담 제공, 기술유출 신고접수 및 경찰청연계	무료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전문가 기업 현장 컨설팅	무료(3일) *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기술자료 임치제도	•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 기술 개발 보유사실 입증	① 신규 : 30만원 / 1년 ② 갱신 : 15만원 / 1년 * 창업, 벤처 등 1/3 감면
	기술임치 활용 지원	•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무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지원(선정평가 실시)	사업비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① 조정 : 5만원 이내(부가세별도) ② 중재 : 신청금액 대비 변동
	법무지원단	• 변호사 또는 변리사 1:1 매칭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 (30시간/6개월)
 한국산협기술보호협회 (02-3489-7050~3)	기술지킴서비스	• 내부정보 유출, 악성코드 등 24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지원	① 보안관제 : 장비 보유 시 무료 ② 내부정보유출방지 : 30개 라이선스 무료 ③ 악성코드·랜섬웨어 : 각 30개 라이선스 무료
 KIBO 기술보증기금 (1544-1120)	기술지킴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 기술개발 보유사실 입증	① 신규 : 30만원 / 1년 ② 갱신 : 15만원 / 1년 * 창업, 벤처 등 1/3 감면 * 부가세 별도
	증거지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 기술거래 과정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	① 신규 : 5만원 / 6개월 ② 연장 : 3만원 / 6개월 * 부가세 별도

CHAPTER

01

기술유출 사전예방하기

기술유출·탈취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빼앗아 손쉽게 돈을 벌려는 한탕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술유출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1-1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각 부처별 기술보호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사업과 연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기술유출피해기업 신고 접수 및 중기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연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의거한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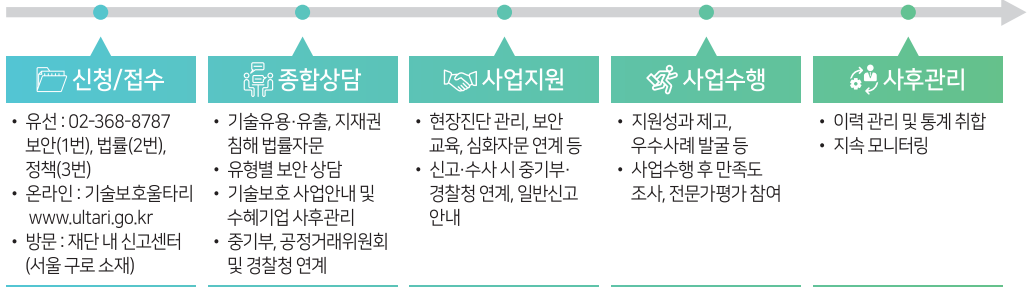
상담분야

보안상담 정보화 기기보안, 관리요령 및 방안	법률상담 기술유출 분쟁·소송 등	기술보호 지원정책 안내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 제도, 기술보호포상, 공정위·신고포상제도	신고·수사 산업기술유출수사 관련 경찰청 연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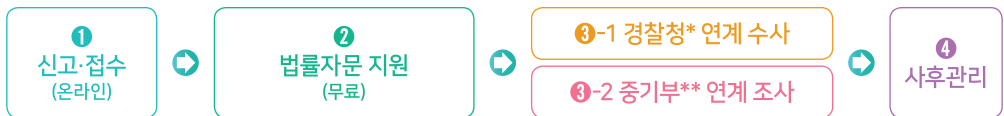
운영시간

평일 9:00~18:00

지원절차



신고·수사



*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유출, 업무상 배임에 해당 시 연계 가능

** 기술침해 행위 사건의 경우 중기부 접수·검토 후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진행

신청 및 문의

- 유 선 : 02-368-8787 (보안-1번, 법률-2번, 정책-3번)
- 방 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옥스벤처센터 4층)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 기술유출피해기업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1-2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 및 보안분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의 보안수준, 실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거한 중견기업

지원분야



보안전략

- 보안지침, 정책서 수립
- 자산관리(자산식별 등)
- 보안조직구성 및 운영
- 인적 보안관리 등



보안시스템

- PC, 서버, 네트워크 보안
- 정보보호자산위험분석



법률자문 (분쟁대응)

- 기술유출 피해기업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지원내용



사전진단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진단 및 법률상담 등 문제점 해결방안 지원

* 진단(1일), 보안교육(1일), 기초자문(1일)

최대 3일
무료지원



심화자문 (필요시)

사전진단결과, 기술유출 위험에 직면한 기업등 심화자문 실시
* 보안분야에 한하여 지원가능

최대 7일, 75%지원
(기업부담금 25%)

* 법률자문은 최대 3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 기술보호올타리 온라인 신청 (www.ultari.go.kr)
-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전문가배정

- 지원자격 검토 후 전문가 배정
- 지역 및 분야별 배정
- 보안/법률전문가: 200명



사전진단

- 3일 무료 진행
- 기술보호역량 진단
- 보안교육
- 심화자문 여부 결정



심화자문

- (필요시) 기업 신청



완료보고/만족도조사

- 최종 완료보고서
- 온라인 만족도조사

신청 및 문의

- 기술보호올타리(www.ultari.go.kr)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02-368-8787)

1-3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대기업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한 경우,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받아 기술개발 및 보유사실 입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내지 제24조의 5, 동법 시행령 15조의 2

이용대상

-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임치대상

기술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 매출에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이용절차



계약유형

- 양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과 임치제도 운영기관 간 기술임치 계약체결 (개발기업-임치기관)
- 삼자간 임치계약 : 임치기술 사용기업과 함께 기술임치 계약체결 (개발기업-사용기업-임치기관)

계약방법

구분	이용방법
온라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www.kescrow.or.kr)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 종합포털(http://ts.kibo.or.kr)
오프라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방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콧벤처센터 4층





TV용 액정기술의 자체개발에 성공한 A사는
임치제도의 기술개발 입증을 통해
경쟁업체 B사의 기술유용 및 제품개발 추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임치수수료

계약유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부가세별도	비 고
신 규	300,000원 / 년	300,000원 / 년	-
갱 신	150,000원 / 년	150,000원 / 년	-
편 입	50,000원 / 년	50,000원 / 년	임치계약의 사용기업 편입
추 가	50,000원 / 건	50,000원 / 건	임치기술자료의 추가·업데이트

[수수료 감면]

* 임치계약 신규 및 갱신수수료 1/3 감면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기술보호분야)

- 지원대상 :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선정 기업
- 공고일 기준 청년창업기업(만 39세 이하 대표자이면서 3년 미만 업력) 중 매출발생기업('18.1.1. 이후)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96호(19. 2. 25.)
- 지원내용 : 기술임치 신규·갱신 계약 수수료의 70% 지원(연간 100만원 한도, 최대 2년)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신청·선정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가한 임치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계약체결



지자체· 유관기관 수수료 지원 (협력재단)

지자체, 유관기관 등 소재 중소기업의 임치수수료 지원을 통한 기술 및 연구 성과물 유출 예방

- 지원대상 : ① 부산 소재 중소기업, ②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③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 지원내용 : 임치 계약 수수료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3건,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임치계약 신청페이지 캡처파일 및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송부
- 신청문의 :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764, kjc@win-win.or.kr

신청 및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종합포탈(ts.kibo.or.kr) 1544-1120

1-4

기술임치 활용지원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제품화 완료/양산준비/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 보유 중소기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임치기술 기본정보공시에 동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단, 휴폐업중인 기업 제외)

지원내용

평가 수수료 지원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무료)
보증료 감면	보증수수료 감면 (최소 0.3 ~ 최대 0.5%)
담보대출 우대	• 대출금리 감면 (부분보증서 : 최대 0.5%, 전액보증서 : 최대 1.0%) • 중도상환 해약금 감면 (최소 30 ~ 최대 50%)
기술거래 지원	기술이전 중개 수수료 감면 (기술 거래액의 2%, 공공기관 적용기준)

지원절차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 및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활용지원' 신청
-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762, escrowbiz@win-win.or.kr

1-5

증거지킴이(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하도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은밀하게 기술유출·탈취가 일어나곤 합니다.

*대기업과 계약체결 전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가 64.7% 수준(중기중앙회 설문조사, '18.9월)

기술보증기금의 증거지킴이는 이렇게 기술거래 과정 상 발생하는 다양한 증거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당시 느꼈던 부담함 등을 기록해 놓은 거래일지)를 등록해 놓고 이를 향후 분쟁 발생 시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거래단계별 등록 대상물의 범위

단 계	대상자료
기술개발단계	기술개발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설계도,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정보관리단계	내부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메일(비밀 정보임을 고지하는 문구 삽입),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보고자료 등
거래교섭단계	거래 또는 제안에 관한 거래처 공문 또는 이메일, 거래교섭 단계에서 생성된 공문, MOU 협약서, 녹취파일 등
실제거래단계	기술자료 요청 이메일 및 공문,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보고서, 거래처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거래관계에 있던 담당인력의 업무에 관한 자료 등
침해대응단계	특정 시점에서 발견된 침해의 증거(기술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

수수료

평가 수수료 지원	수수료(6개월/건,VAT 포함)	비 고
신 규	55,000원	신규 증거지킴이 계약
연 장	33,000원	유지중인 증거지킴이 계약 연장

※ 기술보증기금 임차계약 체결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2건 무료 이용 가능(신규/연장 불문)

신청 및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종합포탈(ts.kibo.or.kr)
- 고객센터 1544-1120



1-6

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내용

- 회사 내 보안장비(UTM, IPS, IDS, 방화벽 등) 보유 시 보안관제서비스 무상 제공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및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 신청 시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내부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랜섬웨어 모니터링

365일 실시간 유출 및 비정상 행위 모니터링

보안관제 업무

24시간 x 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Help Desk

24시간x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이력 관리 및 통계

유출사고 / 대응이력 관리 및 사용자 통계 보고



보안업데이트 권고

신규 취약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안업데이트 권고

월간보고서

수요기관 온라인상에서의 특이 사항 기술 및 총평



정보보안 동향

최근 정보보안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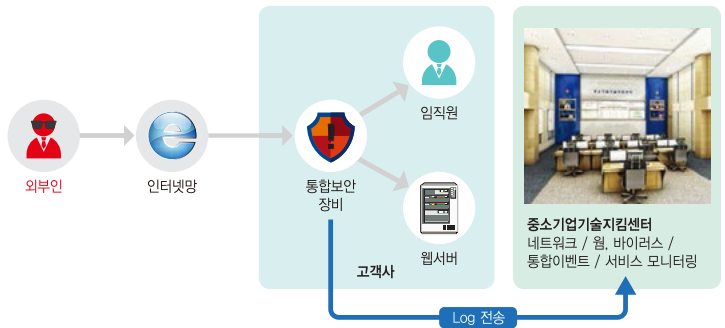


보안관제서비스

서버, PC등에 보관된 중요자료가 해킹, DDoS등 온라인상의 각종 위협요소와 이상징후 발생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탐지하고 예방·대응

* 장비보유(방화벽, IPS 등)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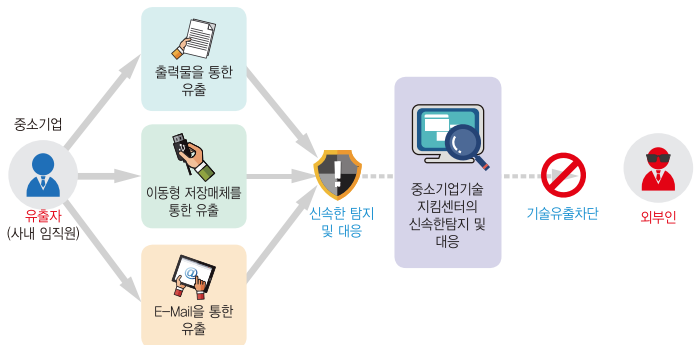
** 장비 임대료 : 9~19만원/월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기업 내부자에 의해서 기업의 중요자료가 E-mail, USB 등을 통해 유출될 때 이상징후를 탐지 및 대응

30개 라이선스/1기업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고성능 악성코드탐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해킹시도,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

악성코드 : 30개 라이선스 / 1기업

랜섬웨어 : 30개 라이선스 / 1기업



신청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02-3489-7050~3)

[중소기술지킴센터 가보니]"산업스파이 꿈작마"... 24시간 감시

최근 기업의 핵심정보와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정보와 기술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 등의 한계로 어렵게 획득한 정보와 기술을 빼앗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핵심정보와 기술 보호에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를 찾는다. 2011년 11월에 문을 연 센터는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기업의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공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준다.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소개(서울경제, 2017년 6월 16일)

기술유출 예방사례

보안관제 서비스

- * **사건개요** : S社の 내부PC에서 이메일 계정 해킹사고 발생 → 공격자는 탈취정보를 이용하여 L社の 이메일 계정을 도용, 해외 바이어에게 접근 → 공격자는 거래대금 송금 계좌번호를 중간에서 변조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로부터 부당이득 취득을 시도
- * **조치사항** : 지킴센터에서 S社 이메일 접속 IP가 수시로 변경되고 해외 IP에서도 접속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안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 통보 → 해당PC는 사적인 용도로 운용 중이었으며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한 사항을 확인. 지킴센터에서는 이메일 계정정보를 변경하고, 관련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를 권고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

- * **사건개요** : T社 연구소 직원이 제품 배합비율 자료를 E-mail 및 USB로 유출시도 → 지킴센터는 해당 유출행위를 탐지하여, T社 보안담당자에서 통보 → 조사결과, 중요자료 대량유출 사실이 확인되어유출된 자료를 전량 회수
- * **조치사항** : 지킴센터는 해당 직원의 유출행위를 분석하여 보안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추후 중요자료 무단반출 사고를 막기 위하여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권고해 보안성을 강화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서비스

- * **사건개요** : V社 직원메일로 랜섬웨어 유포 → 직원 부주의로 인하여 랜섬웨어 PC에 감염 →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 설치 후 정밀검사 도중 PC에서 바이러스 탐지 → 실시간 치료 진행하여 감염을 방지, 사후조치
- * **조치사항** : 악성코드 탐지 솔루션을 통해 정밀검사 실시하여 피해를 입기 전 조치 완료 → 이메일 및 메신저 등을 통해 첨부파일 다운로드시, 반드시 백신검사 후 실행하도록 교육 → 실시간 감시기능 활성화 및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권고 → 악성코드·랜섬웨어 ZERO화로 클린오피스 환경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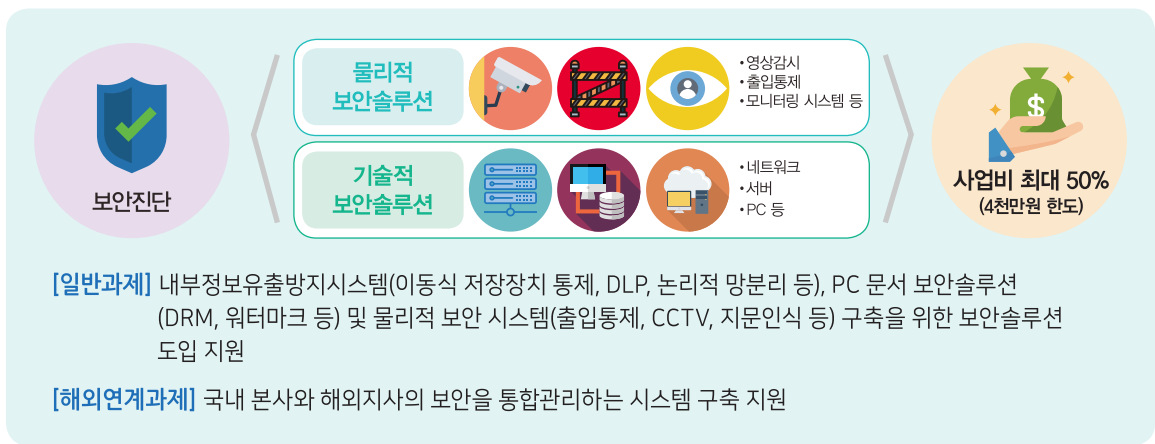
1-7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 후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개별기업의 보안인프라 환경 진단 및 설계후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 우선 지원 대상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방산(물자) 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인증기업(PIPL), 가족친화 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기존 유출방지사업 도입기업 중 고도화 지원 필요기업(단, 사전진단 시 전문가 인정 필요)

지원절차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 * 단, 기 시스템 도입 기업 중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 매년 3 ~ 5월,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확인

신청 및 문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5

CHAPTER

02

기술유출·침해 사후구제 지원받기



그 동안 기술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장기화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젠 기술유출·침해 피해를 입을 경우, 사후구제 지원사업을 이용하세요

기술침해 신고·조사, 조정중재위원회, 법무지원단(전문가의 심층 자문)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할 수 있는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조성되어
'기술탈취 ZERO'가 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1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술침해행위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개 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제도가 시행('18.12)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 추진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침해 조사
- 침해내용(검토)에 따라 타부처 및 분쟁 조정제도 이관
- 가해기업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지원조건

- (신청대상) 기술유출, 탈취 등 피해발생 중소기업
- (신청방법) 신고서 서면제출, 연중상시 접수

지원절차



신청 및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조사팀 (042-481-4400)
- * 제출서류(양식)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신고' 참고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2-2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조정·중재 제도란?

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조정** :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
※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중재합의(계약서)"** 작성을 통한 사전합의 필요

중재합의(계약서) 조항(안)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시 그 소는 각하됨

조정·중재 효력

조 정

- 조정부가 당사자간 합의 유도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합의실패 시 중재 또는 소송 필요



중 재

-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
-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종국적 해결(소송불가)

* 위원회의 조정합의 및 중재판정 결과 불이행시 관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

조정·중재 장점

전문성

4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23명
- 기계,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 26명

객관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사실조사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도출

신속성

소송보다 빠른 분쟁 해결

- 조정의 경우 3개월 소요
-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

경제성

부담없는 해결 비용

- 조정의 수수료로 진행가능
-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 대리인 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특허심판 비용 지원





G사는 H사와 수출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H사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의해 계약 종결 되었습니다.
이후 H사는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게 제공하여,
유사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G사는 H사를 상대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여
소송보다 적은 시간·비용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이 우려되는 자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

- 형사 수사(경찰·검찰) 중인 분쟁사건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지원내용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에 소요되는 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1기업)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용 지원(최대 10백만원/1기업)

[특허심판 비용] 조정 진행 중 발생하는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비용 지원 (최대 5백만원/1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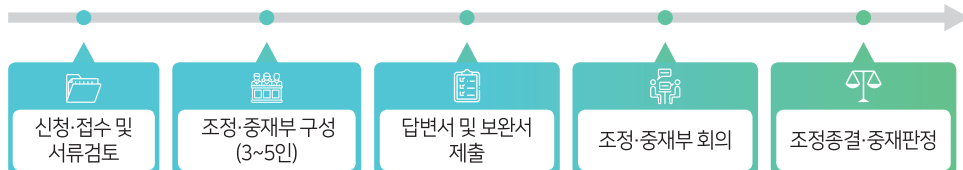
* 소송 및 특허심판 비용은 심사를 거쳐 지원

소요기간

- 조정 :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

- 중재 :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

지원절차



수수료

조 정		중 재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신청금액	수수료	예납자	신청금액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	신청인	1천만원 미만	20,00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 + 신청금액 × 0.15%
10억원 이상	50,00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 + 신청금액 × 0.10%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		10억원 이상 ~	555,000 + 신청금액 × 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

신청 및 문의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02-368-8768, solomon@win-win.or.kr

2-3

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침해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1:1로 매칭,
심층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후구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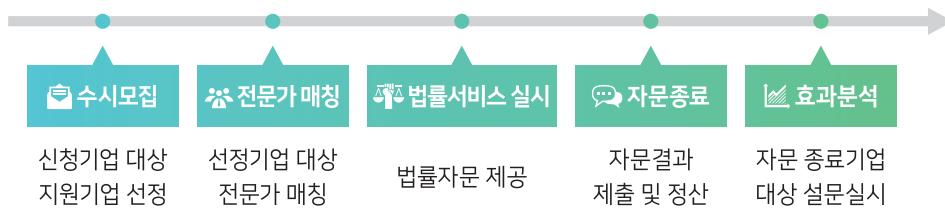
- 40개사 내외

지원내용

-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분쟁 법률 전문가를 피해 중소기업에 매칭 배정하여 조정·중재, 소송, 행정조사 등 법률 자문 제공
 - ①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② 특허심판·소송 등 법적 해결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 지원
 - ③ 기타 기술유출·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피해구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등
- ※ 조정·중재 및 소송 대리 수행의 경우 지원불가

구분	지원금액	지원시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피해 중소기업	최대 7.5백만원	최대 30시간(6개월)	100%	무료

지원절차



신청 및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37
- * 제출서류(양식)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 참고

지켜라
우리회사
핵심기술!

'기술보호 법률주치의'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 •



•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 사건처리 흐름도 •





중소기업 기술보호, 비밀유지협약이 첫걸음입니다.

기술침해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내 소중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비밀유지협약(NDA)이란?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기술·경영정보를
서로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협약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기업맞춤형 보안 솔루션 제공

개별기업의 맞춤형 기술적·물리적
기술보호 솔루션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차별화된 보안관제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감시 및 분석 등 관제서비스,
내부 임직원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 등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합니다.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전문가가 찾아가는 1:1 자문

기술유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보안·법률 전문가가
코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침해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심층법률 자문을 제공, 신속한 사후구제를 지원 합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운영

기술 분쟁사건 애로해결

기술유출·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비용·시간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 및 활용지원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의 효율적인 보호장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치된 기술로 사업화
지원자금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술보호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